

#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HK+)연구단 운영규정

(제정 2018. 6. 1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[Humanities Korea plus] 지원사업(이하 “HK+사업”이라 한다)의 인문분야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연구단의 명칭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이하 “HK+”라 한다.) 연구단(이하 “연구단”)이라 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본 연구단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한국연구재단 HK+ 지원사업
2.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
3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4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
5.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발간·연구결과 출판
6. 지역 사회 인문학 대중화·확산
7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 제2장 조직

**제5조(구성)** ① 연구단에는 연구단장, 연구부단장, 일반연구원, HK교수, HK연구교수, 연구보조원, 전담행정직원 등을 둔다.

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단에 각 분과를 두고, 분과장을 둘 수 있다.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6조(연구단장 및 연구부단장)** ① 연구단장은 HK+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HK+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단장의 임기는 HK+사업기간(3년+4년)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연구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며,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
④ 연구부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단장이 공식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일반연구원)** ① 일반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단장이 임명한다.

② 일반연구원은 HK+사업의 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 참여 시 사업비(연구비)에서 학술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HK교수 및 HK연구교수)** ① HK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「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」에 의거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「HK연구교수 인사규정」에 의거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

③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.

④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임용, 직위, 처우, 복무 등은 각각 본교 「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」 및 「HK연구교수 인사규정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연구보조원)** ① 연구보조원은 학사, 석사, 박사학위 과정생 및 수료생으로 연구단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보조원은 사업비에서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.

**제10조(전담행정직원)** HK+연구단에는 사업단의 제반 행정사항을 관리할 전담행정직원을 배치한다.

### 제3장 지역인문학센터

**제11조(설치)** 연구단에 지역인문학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를 두며, 그 명칭은 “온다라 인문학센터”라 한다.

**제12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HK+사업의 지역사회 확산
2. 지역인문자산의 국제적 확산 추진
3. 초·중등, 대학,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활성화
4. 인문교육실시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인문교육 강화 및 지원
5. 지자체·인문교육실시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인문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

**제13조(구성)**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센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둔다.

**제14조(전담행정직원)** 제반 센터의 제반 행정사항을 관리할 전담행정직원을 배치한다.

### 제4장 운영위원회

**제15조(설치)** ① 연구단의 주요 연구·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·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4.1.>

③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된다.

④ 연구부단장, 참여연구소장,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운영 및 예산 편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
3.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HK+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

**제17조(회의)**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5장 평가위원회

**제18조(설치)** ① 연구단 자체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된다.

④ 연구부단장과 지역인문학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9조(기능)** ① HK연구인력의 연구실적,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연구실적 및 사업수행실적을 발견했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제소할 수 있다.

**제20조(회의)**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6장 보칙

**제21조(연구윤리 관련제도)** 연구실적 및 연구비 관련 투명성 제고와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항은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
**제22조(지적재산권)** 연구단의 아젠다 수행에 따른 연구 및 조사 자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는 본교 「지식재산권 관리규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